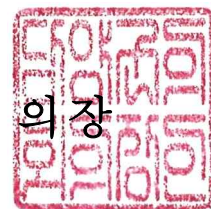


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1. 10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군민 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o 부칙 개정(안 부칙 제2조)

가. 이 조례 시행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규정에도 불

구하고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 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, 증축, 개축할 수 없다 → 증축, 개축, 재축할 수 없다.

나. 허가·신고를 받은 기존 사육시설로 주민동의를 거쳐 [별표 3]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개선하고자 할 때에 동일 부지에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의 개축·재축일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, 다만, 재축일 경우는 주민동의를 제외하며, 돼지·개는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.(안 부칙 제2조제2호)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1. 10. ~ 11. 17.(7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<p>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>2023년 11월 일</p> <p>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담양군의회 의장 귀하</p>		

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807호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축, 증축, 개축”을 “증축, 개축, 재축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단, 재축일 경우는 주민동의를 제외하며, 돼지·개는 주민동의를 거쳐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